

신우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

(2026년 1월 9일 교육 실시)

제1장, 총칙

1. 목적

본 규정은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2조 및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9조 제2항에 따라 신우노인복지센터(이하“기관”이라 한다)에 관한 기관운영에 관한 규정을 그 목적으로 둔다.

제2장. 기관의 운영

제1조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

- 온라인 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을 방문요양, 방문목욕 급여를 홍보한다.
- 오프라인: 지역사회 홍보, 수급자(보호자)를 통해 방문요양, 방문목욕 급여를 홍보한다.

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- 계약기간, 계약목적,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-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- 계약의 해제

제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
제4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

- 서비스 내용 : 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고시, 제반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상담, 욕구사정과 평가,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, 장기요양급여를 성실하게 제공한다.
- 방문요양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.: 신체활동지원, 인지활동지원, 인지관리 지원, 정서지원,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,
- 방문목욕은 가정 내 목욕급여로 구분한다.

제5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,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

제6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
- 개정방법: 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,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또는 관련 지침이 개정된 경우, 그 내용을 준용하여 회의 절차 없이 즉시 개정할 수 있다.
- 개정절차 : 직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. 대표자 또는 과반수의 발의로 운영규정개정안을 발의 할 수 있다. 직원에게 불리한 개정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개정할 수 있다.

제7조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: 채용, 복무, 승진, 상벌 등

채용

- 직원의 자질:어르신섬기며 사랑으로 대하기, 기관과 직원간의 융합과 협력하는 공동체 정신소유
- 직원의 자격증 : 요양보호사 1급
-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부
- 신분증 사본

복무

복무규율, 근로시간, 결근, 조퇴, 복무 의무

승진 및 상벌

제8조 보수에 관한 사항 : 임금, 퇴직금, 상여금 등

제9조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: 복지(포상금,(연차), 병가, 경조휴가 등)

제10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

- 근골격계질환 및 감염 예방, 건강검진(급여제공지침: 연 1회 이상)
- 감염의 정의, 예방
- 건강검진

제11조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

- 고충처리접수방법 및 처리원칙
- 전화, 인터넷, 직원 면담, 고충처리함, 건의함 등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.